

● 제32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2. 19.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전병주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4. 10. 15.
- 다. 회부일 : 2024. 10. 18.
- 라. 의안번호 : 216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서울시의회 전반에 청렴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의회의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 청렴도 평가, 청렴도 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0. 23. ~ 2024. 10. 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 동의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됨.
- 본 제정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의무,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청렴도 평가, 조사, 청렴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실현을 통해 시민의 신뢰 확보
제2조(정의)	- “공직자” 용어 정의
제3조(의장의 책무)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노력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및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하는 행위 금지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렴문화 조성 기본방향, 실태, 목표 및 전략 등 (제2항) -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 유관단체 의견 반영 (제3항)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교육 및 홍보, 평가 및 조사, 체험 및 실천, 사례연구 조사 등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1항)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개인정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 (제2항)
제7조(청렴도 평가)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청렴도 평가 실시 (제1항) -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 위탁 (제2항)

제8조(청렴도 조사)	-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부패발생 소지 예방 및 시민 불안족 사항 파악을 위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제1항) -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 위탁 (제2항)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제1항) -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 (제2항) - 시민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 (제3항)
제10조(표창 등)	- 우수 부서 및 공직자에 대한 표창 혹은 포상금 지급
제11조(협력체계)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등 협력체계 구축

2 제정안의 발의 배경

- ‘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¹⁾에 따르면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중앙, 광역, 기초, 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전체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3년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

지방의회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전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68.5점	80.5점	80.7점	78.6점	76.9점	82.1점	84.6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 서울시의회의 경우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4등급(69.8점)으로 2021년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한 이후 2회 연속 하위 등급을 기록함.

1)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

구분	종합청렴도(100)	청렴체감도(80)	청렴노력도(20)	감점(10)
2023년	4등급 (69.8점)	4등급 (67점)	4등급 (81.1점)	0.0점
2021년	5등급	5등급	5등급	0.01점

* '22년은 지방선거로 청렴도 평가 미 실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예산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종합청렴도 하위 등급을 부여받아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의회 소속 공직자는 업무 수행에 있어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이에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3 조문별 검토

가.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제1호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지방의회의원’을 규정하였는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²⁾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제2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가목³⁾을 인용하여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있음.
 - 또한 의회 내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이 있음.
- 본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⁴⁾와

2)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4)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다.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에서,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2. (생략)</p> <p>3. <신설></p>	<p>제2조(정의) ----- ----- ----- -----.</p> <p>1.~ 2. (제정안과 같음)</p> <p>3.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p>

나.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의장에게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의장으로 하여금 서울시의회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동 규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공직자
 다.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공직자의 청렴의무 (안 제4조)

- 안 제4조는 공직자에게 청렴한 직무수행과 더불어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공직자의 청렴문화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청렴의무는 공직자의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공공 조직의 신뢰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라.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및 활성화 사업 등 (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은 ▶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임.
- 또한,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 교육 및 홍보사업 ▶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 ▶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임.
- 현재 의회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3개 분야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청렴정책 세부 추진과제 >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1-1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 사업 참여
	1-2 청렴도 향상 위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
	1-3 인사정보 공개 및 고충상담 소통채널 활성화
	1-4 1부서 1청렴 자율실천과제 지속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공감 형성	2-1 서울시의회 자체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확대 추진
	2-2 청렴 알림문자 발송 강화, 업무추진비 공개 모니터링
	2-3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2-4 간부직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확대 시행
알기 쉽고 재미있는 청렴 교육·홍보 강화	3-1 서울시의회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3-2 부패취약기간 청렴주간 운영 및 청렴홍보 강화
	3-3 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강화
	3-4 공직기강 확립 점검활동 강화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 향후 의회사무처는 본 제정안의 청렴문화 기본계획 및 사업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서울시의회만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서울시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안 제6조의2)

- 안 제6조의2는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6)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용함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의 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함.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는 무단 수집, 이용, 제공, 공유 등의 방식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침해는 개인의 권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청렴문화 확산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다만,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됨에도 조례에서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⁷⁾이 있었는데,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청렴도 평가 및 조사 (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는 의회 조직 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청렴도 평가) ①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조직법」, 직제,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업무를 개인정보 수집 없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므로,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개별 법률에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로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3.12. 515—516면 참조).

- 이는 서울시의회의 자체 청렴도 평가와 조사를 통해 부패 취약 요소를 집중 개선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의회의 청렴도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확대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청렴도 평가 및 조사 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거나 특정 업무나 직무만 평가하는 경우 한계성이 존재할 수 있는바, 조사 대상을 다양화하고, 정량적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청렴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 안 제9조는 의장이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청렴 활동 내용과 청렴도 향상 실현을 위한 홍보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제1항은 의장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제2항은 청렴주간 운영,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의장이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책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임.

- 현재 의회사무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규정은 의회사무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청렴교육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시민 참여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 표창 등 (안 제10조)

- 안 제13조는 청렴문화 조성기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표창 등)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는 서울시의회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적용 범위가 모호한 것은 아닌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제정안의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의원에게 의장 명의의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자. 약칭 정리 일부 자구 정비 등

- 본 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의회’를 혼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약칭을 ‘의회’로 사용하고 있는바, 입법 체계 및 통일성을 고려해 일부 자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자구정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u>서울시의회</u>를 실현하고 <u>서울시민</u>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의회</u>----- <u>서울특별시민</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p>
<p>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u>서울시의회</u> 청렴도 향상 및 부 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p>	<p>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 <u>의회</u> ----- ----- -----. ② ~ ③ (제정안과 같음)</p>

4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서울시의회 소속 공직자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야하는 의장의 책무와 청렴문화 기본계획 및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서울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지방의회 공직자들 사회적 청렴도 인식과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부 공직자의 부패로 청렴도가 저하되는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조항(안 제2조, 제6조의2, 제10조)에 대해 타당성과 조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의회사무처는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의회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계획’에 조례안의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서울시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담당 연락처

02-2180-7691